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1. 20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1. 13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 16

다. 상 정 일 자 : 제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주 강 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 자치구의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안 제2조)

◦ 구본청 : 413명

◦ 보건소 : 46명

◦ 동 : 263명

○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지금까지 자치구 규칙으로서 관리 운영하던 자치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을 의회가 통제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의결